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지식재산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」(2025. 5. 27. 일부개정, 법률 제20963호)이 '26. 5. 28. 시행될 예정인 바,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 위임사항인 동 제도의 지급기준·방법·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'신고포상금'에서 '포상금'으로 명칭 정비(안 제3조의8)

상위 법률이 신고포상금에서 포상금으로 조 제목, 조문 등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도 이에 맞춰 명칭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

나. 영업비밀보호(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)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(안 제3조의9)

1) 포상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 최대 2억원으로 규정

-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 행위는 방첩 업무와도 관련이 있으므로, 방첩 업무에 대한 개정 동향 반영

2) 포상금 지급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 마련

- 신고자 관련 절차는 기존의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과 동일

하게 규정하여 절차의 일관성 제고

- 그밖에 제도 운용상 필요한 세부적인 지급 기준·방법 등은 행정
규칙에 재위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6. 2. 6. ~ 3. 20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8의 제목 “(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)”을 “(타인의 상품표지 혼동행위에 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신고포상금(이하 “신고포상금”)”을 “포상금(이하 “포상금”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,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신고포상금”을 각각 “포상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신고포상금의 구체적”을 “포상금의 구체적”으로, “신고포상금의 지급”을 “포상금의 지급”으로 한다.

제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9(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)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최고액은 2억원으로 한다.

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신고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, 그 결정일로부터 15일 이

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지식재산처장은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.

1. 해당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의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
2.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
3.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, 형의 종류 및 경중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·방법 및 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8(<u>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</u> 등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 받는 <u>신고포상금</u> (이하 “ <u>신 고포상금</u> ”이라 한다)은 한 사람 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 다.	제3조의8(<u>타인의 상품표지 혼동행 위에 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</u> 등) ① -- <u>포상금</u> (이하 “ <u>포상 금</u> ”----- ----- --.
② <u>신고포상금</u> 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.	② <u>포상금</u> ----- ----- -----.
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 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<u>신고포상금</u>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, 그 결정 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포상금</u> ----- ----- -----.
④ 지식재산처장은 <u>신고포상금</u>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	④ ----- <u>포상금</u> ---- ----- -----.
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<u>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· 방법 및 절 차 등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 요한 사항</u> 은 지식재산처장이 정	1. ~ 3.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<u>포상금의 구체 적</u> ----- --- <u>포상금의 지급</u> ----- -----

한다.

<신 설>

---.

제3조의9(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)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최고액은 2억원으로 한다.

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신고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, 그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지식재산처장은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.

1. 해당 신고가 수사기관의 수사의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
2.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
3.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, 형의 종류 및 경중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·방법 및 절차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	
연 락 처	(042) 481 - 5771